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2. 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2. 2. 10.

운영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발 의 자: 정창근 의원 외 9명(정창근,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홍복조)
- 발의일자: 2022. 1. 26.
- 회부일자: 2022. 1. 27.
- 검토기간: 2022. 1. 28. ~ 2. 4.(5일간)

##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규정(안 제1조)
- 모범공무원 대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규정(안 제3조)
- 모범공무원 수당 및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4. 참고사항

-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제79조
- 「모범공무원 규정」 제1조~ 제5조 및 제8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2. 1. 26. ~ 2022. 2. 7.)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22. 1. 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포상의 종류)에 추가된 모범공무원 포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범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대상 및 추천, 선발, 모범공무원 수당 및 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대상과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소속된 6급(상당)이하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2.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속한 6급(상당)이하 공무원: 부서장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진출된 때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및 조례안]

###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 모범공무원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功績調書)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 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창의적인 제안 등을 통하여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제6조제3호에 의해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호선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⑥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주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